

제19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
제1차 본회의 2012.2.10(금) 10:00

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전 문 위 원

「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」 검토보고

1. 제 안 자 : 고령군수

2. 제안이유

고령군에 소재한 영세소상인 보호,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령군에서 발행하는 고령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(안 제3조)
- 상품권 유통지역은 군 일원으로 한정 함(안제5조)
-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지정(안 제6조)
- 상품권 사용자 준수사항(안 제8조)
- 대금의 지급 등 상품권 관리(안 제9조, 안 제10조)

4. 관계법령

- 관련법령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

-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령사랑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발행된 고령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적 근거 마련으로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○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3조에서는

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와 상품권의 보관, 판매, 환전 업무를 군금고 및 금융기관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- 안 제5조에서는

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권의 유통지역을 군일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.

- 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에서는

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과 판매 대행점에 대한 관리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
- 안 제8조에서는

상품권의 부주의로 도난, 분실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 등 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안 제9조 내지 안 제10조 에서는

판매대행점은 가맹점에서 대금청구시 위·변조를 확인하여 현금을 지급토록 하고, 환급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후 군수에게 송부하고, 군수는 상품권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5년간 보관후 폐기하는등 대금의 지급 과 상품권의 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내용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

- 본 조례안은

고령군에 소재한 영세소상인 보호,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령사랑 상품권에 관련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다만, 상품권 판매 대행점에 대하여 상품권의 보관, 판매,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판매 수수료, 환전 수수료와

고령사랑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한 할인판매의 규정이 없어 상품권 판매 측면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